

政府規制政策과 企業經營行態**

安 海 均*

〈차 례〉.....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1. 財務構造의 脆弱性과 不健全性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2. 技術水準에 관련된 문제점
II. 分析의 률	3. 企業의 對 消費者關係
1. 自由經濟體制와 政府役割	4. 勞使關係
2. 企業規制政策의 一般的特徵	5. 大企業의 經濟力集中
3. 政府의 企業規制經路	6. 企業의 社會的 責任意識
III. 韓國企業에 대한 肯定的 視 角과 否定的 視角	V. 規制緩和과 改善方案
1. 政治圈과 經濟	1. 基本方向
2. 企業의 社會的 機能	2. 企業活動의 正當性提高
IV. 韓國企業의 行態상의 問題點	3. 企業經營 및 對政府關係의 合 理化

〈요 약〉

本研究는 韓國의 政府規制政策이 形成되는 과정에서 그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여러가지 측면中 被規制集團인 民間企業에 내재하는 요인을 추출하고, 그 요인의 규제정책 유발경로를 巨視的 次元과 微視的 次元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韓國企業들이 生成, 發展過程에서의 正當性 缺如가 對國民 이미지와 輿論形成過程과 큰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촉매변수로 작용하여 官僚制에 대한 하나의 압력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政府規制의 誘發要因으로 化한다는 巨視的 分析과 現在 民間企業의 經營 관리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政府規制의 當為性을 긍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微視的 分析을 통해서 政府規制의 緩和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政府規制政策이 완화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前提條件으로서 企業들의 行態變化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本研究는 政府規制政策의 形成과 執行過程에서 나타나는 官僚制상의 문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 이 論文은 서울大 學術財團의 研究費支援에 의해 作成되었음.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지나 20년동안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괄목할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던 政府主導의 經濟政策은 이제 經濟環境의 變化에 따라 限界에 이르고 있음을 政府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認識하게 되었다.

그러나 民間企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縮小 내지 緩和를 통해 自律的 民間主導 經濟· 육성하겠다는 政府의 公約은 法律施行 또는 行政運用이라는 實제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면 별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政府와 企業間에 國家 經濟이 있어서 차지하는 政府의 役割에 대한 생각이 서로 상이하며, 政府—企業關係에 있어서 바람직한 政府規制의 方式과 크기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립된 原則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수렴될 수 없는 平行線을 그어 왔던 것이다.

우리와 같은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政府 또는 行政役割에 대해 肯定的인 評價를 先尊해 온 “發展行政論의 思考方式”은 經濟環境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民間企業에 대한 政府規制를 正當화하는 理念의 根據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先進國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政府役割에 대한 再評價 및 政府規制의 縮小주장은 단순한 學問的 流行의 차원을 넘어서서 實제적인 美國 민적 利益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하겠으며, 政府主導의 국가발전을 신봉하는 우리의 풍토에 하나의 큰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 및 행정의 民主化와 社會諸部門의 自律性이 요청되는 현시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民間企業은 資本主義體制를 성립케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經濟主體이다. 우리나라도 資本主義를 표방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企業은 政府에 대해 대등한 地位를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企業의 内部 行態상의 어떤 측면이 政府의 規制를 유발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企業과 政府가 각자의 役割을 올바로 인식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頽倒된 力學關係를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民間企業에 대한 政府規制 誘發要因은 크게 政府內在的 要因과 企業內在的

要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본研究는 後者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즉 企業活動의 逆機能으로 인해 政府規制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그런데 企業活動이 逆機能 現象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政府規制를誘發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의 經濟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느냐, 그 나라의 政治體制의 特性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規制의 幅과 性格은 달라진다.

그리므로 本研究는 政策學的 視角에서¹⁾ 우리나라에서의 對企業政策의 特殊性을 조명함으로써 企業活動과 관련된 環境的 脈絡을 규명하여 政府의 企業規制經路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企業規制의 幅과 性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히 市場의 失敗 또는 經營管理상의 不合理라는 經濟學·經營學的 觀點 또는 企業活動의 政治·社會的 脈絡만을 다루는 政治·社會學的 觀點은 자칫 우리의 特수성을 도외시한채 西歐的 理想論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들 전체를 政策學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本研究는 기존의 文獻들을 충분히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研究書, 定期刊行物의記事 등은 企業의 活動을 매우 批判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도 企業의 行態의 側面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역시 批判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政策學的 觀點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批判에 대해서는 그대로 受容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全體社會의 性格도 빙영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므로 本研究는 企業活動의 政府規制 誘發經路를 분석하는 즈거들을 가설적으로 도입하여 巨視的 次元의 政府規制 誘發要因과 微視的 次元의 政府規制 誘發要因을 규명한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批判을 주로 하는 기존의 研究文獻들을 分析하고 필자의 經驗과 그 동안의 研究過程에서 습득한 主觀的 判斷에 많이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主觀은 개인적 사고로부터 도출된 것은 아니며 政府關係部處의 公務員, 消費者로서의 國民, 各 企業體의 經營主 등과의 面談을 통해 客觀化시키고자 노력한 결과임을 밝혀 둔다.

1) 이러한 政策學的 觀點의 특성에 대해서는 安海均, 政策學原論(서울:茶山出版社, 1984) 참조.

II. 分析의 曙—企業活動의 政府規制 誘發經路

1. 自由經濟體制와 政府役割

(1) 西歐資本主義體制와 政府機能

資本主義은 個人主義과 私有財產制度를 기본으로 한다.

西歐의 경우 이들 2大構成要素가 오랜 세월을 통해 확립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經治者와 被治者는 무수한 對立과 葛藤을 겪었으며 최악의 경우 戰爭과 革命까지도 불사하였다. 여기서 個人主義란 獨立된 個人이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合理的決定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個個人의 자유로운 意思決定이 전체 社會의 總量的 福祉를 증진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私有財產制度는 自然權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핵심은 人間이 가지고 있는 利己心은 本然의 屬性으로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富는 正當하고 이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社會的規範을 뜻한다. 利己心과 私有財產制度, 個人主義와 個人間의 자유로운 競爭이 資富의 極大化로 연결됨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것이 A. Smith의豫定調和說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적인 調和의 세계를 이루하여 국민의 번영을 가져오는 곳에서 國家가 할 수 있는 역할은 夜警國家에서처럼 최소한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產業革命의 副作用이 社會問題화하는 19세기末에 이르면 修正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대립이 나타난다. 이들 兩者的 차이점도 그 초점은 앞에서 언급한 個人主義와 私有財產制度의 認定與否이다.

따라서 現代資本主義는 부문적으로는 社會主義와의 體制競爭으로 특징지워지는데 ○ 과정에서 分配制度와 관련된 政府介入(government intervention, state intervention)이 증대하였다. 한편 生產制度도 政府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이 獨占의 폐단이었다. 20세기에는 生產과 그에 따른 外部不經濟가 비판의 초점이 되어 環境問題에 대한 政府介入이 시작되었고, 市民意識의 성숙과 함께 消費者保護問題도 중요한 政府機能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²⁾

이렇게 보면 西歐의 資本主義도 순수한 형태는 아니다. 福祉國家라고 통칭되는 現代資本主義에서의 핵심은,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政府介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介入은 항상 國民的合意를 바탕으로 하여 왔다는 것

2) ① 부규제를 經濟的規制와 社會的規制로 구분할 때, 최근에 들어서서는 위와 같은 環境問題을 위치한 社會的規制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政府規制에 따른 費用과 便益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므로, 時代의 要請과 政權의 性格에 따라 規制의 幅과 깊이에 변화는 있었지만 國民的 合意와 유리된 規制는 존재하지 않았다.

(2) 韓國經濟體制의 特徵

西歐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歷史的으로 볼 때 資本主義와는 다소 이기적인 토양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社會文化規範을 특징 짓는 儒教는 個人主義가 아닌 集團主義, 私有財產制度가 아닌 國有財產制度에 기초하고 있다. 朝鮮時代의 身分制度를 보더라도 營利를 추구하는 商人은 하위계층에 속하였다. 商人の 本質은 利己의追求인데, 利己心은 人間이 가진 本能이지만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 儒教의 韓國的 變形이 초래한 결과였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經濟體制는 歷史的으로 볼 때는 資本主義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며, 西歐의 基準에 비교적 부합하는 資本主義는 겨우 해방이 후 40여 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또한 國家經濟規模가 협소하여 政府部門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民間經濟部門은 政治體制에 대해 獨立的이지 못하고 從屬的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 企業規制政策의 一般的 特徵

1948年 政府樹立 당시 우리나라의 國民總生產額은 10억 달러에 불과하였고 外國援助는 무려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1953年에도 外國援助는 國民總生產額의 15%를 점하였으며 1960년의 1人當 國民總生產額은 8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³⁾

이와 같은 상황에서 政府主導의 成長政策과 配分政策이 시작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對企業政策은 介入領域과 政策目標, 政策過程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政府의 介入領域은 거의 無制限이다.

政府는 經濟活動에 필요한 公正한 게임의 規則이 지켜지도록 감시·감독하는데 그치지 않고 經濟主體의 活動內容까지 세부적으로 지시하였다. 나아가 資本主義의 가장 중요한 要素인 私有財產마저 침해하였다. 5·16 軍事 쿠데타 이후의 不平等財還收, 8·3 緊急措置 등에서 보듯이, 私有財產은 몰수의 대상이 되고,

3) 崔 洪, 財政統計資料集(서울:韓國開發研究院, 1983), p.16.

財產權의 行使마지 필요에 따라 停止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政策目標는 成長第一主義이며 理念과는 무관하다.

표1] 적으로는 自由經濟體制를 표방하고 있지만 西歐諸國이 겪어온 수백년의成長¹⁾을 불과 30년으로 단축해야 했으므로 資源活用은 極大效率만을 추구하였다. 대략한 內需基盤으로 輸入代替가 아닌 輸出主導의 開發戰略을 택하여 모든政策이 輸出外形의 極大化를 위해 입안·실시되었고 開發의 利益은 일차적으로企業²⁾, 이차적으로 勤勞者가 배분받도록 하였다. 輸出에 치중한 결과 그에 따른 危險을 최소화하기 위해 大企業爲主의 政策이 선호되었다.

세째, 政策決定過程은 非公開的이고 參與가 制限의이며 卽興의이었다.

政府官僚制가 軍의 영향으로 극도의 秘密主義를 띠게 되어 政策決定過程에는 극소수의 關聯者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關聯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1次集團의 性格을 나타내었다. 政策의 Model이 되는 西歐의 理論이 우리의 실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西歐의 Model에 입각하여 입안된 최초의 政策은 副作用이 발생할 때마다 修正되는 卽興性을 나타낸다. 한편 일단 決定이 독 政策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신속하게 執行이 된다. 政府官僚制 내부에企劃·統制制度와 實績主義人事制度가 발달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는 일은 즉시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執行過程에서는 官僚와 연결된 一次集團의 영향과 對人關係를 중시하는 社會文化的 영향으로 選擇的 執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I. 政府의 企業規制 經路

無制限의인 政府介入, 經濟成長爲主의 政策目標, 參與制限의인 政策決定, 選擇의인 政策執行 등으로 말미암아 政府의 企業規制政策은 積極의 아닌 消極의인 特징을 나타낸다.⁴⁾

企業活動의 위축은 곧 經濟成長率의 저하로 연결되고 이와 관련된 主務部處의 責任者는 즉시 身分上의 不利益을 받게 되므로, 規制를 하는 경우에도 學界 또는 言論에서 批判이 제기되어 輿論化하는 경우 마지 못해 反應을 나타내는消極的인 規制를 하게 된다. 그리고 輿論에 따라 規制를 하는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執行에 옮기지 않고 수동적인 執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脈絡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企業規制政策은 다음과 같은 過程으

⁴⁾ 여기에서 政府規制가 消極의라고 함은 範圍 및 對象의 협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規制活動의 能動性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로 나타낼 수 있다.⁵⁾

위의 그림에서 媒介變數는 네 가지로 표시되어 있다.

첫째, 촉매장치(Triggering Device)로서는, 企業活動의 過程에서 파생되는 反社會的 行爲가 많으며 이것이 言論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에는 TV와 新聞의 普及率이 국도로 저조하였고 文盲率 또한 80%를 上廻한 때도 있어서 言論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1970年代에는 言論이 政府에 의해 장악되어 보도내용도 政府의 公開된 資料에 국한하였고, 反社會的 企業活動도 刑事事件 위주로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1980年代 중반이후 言論活動이 政治圈問題를 제외하고는 어느정도自律性을 회복하면서 독자적인 深層取材가 이루어지고 보도내용도 단순한 刑事事件에 머무르지 않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연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둘째, 對企業 Image란, 言論에 보도된 企業의 反倫理的 行爲가 國民大衆에게 주는 企業에 대한 印象을 뜻한다.

이미지는 물론 國民各自가 企業에 고용되어서, 또는 企業主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형성되기도 하지만, 言論의 보도는 이들 個別의 體驗을 확인해 함으로써 企業全體에 대한 國民輿論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國民輿論의 教育水準이 낮을 때에는 感情에 좌우되지만, 教育水準이 높아갈수록 理性的인 判斷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國民들이 느끼는 企業에 대한 이미지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같이 教育熱이 높은 국가일 경우 時間이 흐름에 따라 짧은 기간동안에도 현격한 변화양상을 나타낸다.

기제, 政府內의 規制誘發要因에 대해서는 이 研究의範圍밖에 있으므로 제외할 것이나 본 論議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企業規制政策의一般的特徵이다.

이 政府의 對企業政策은 消極的인 規制로 일관되고 있으며 西歐의 경우와 같이 資本主義의 構造의 矛盾을 시정한다는 積極的인 의미는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deology에 매우 민감하여 資本主義의 矛盾에 대한 批判은 곧 容共과

5) 이 그림은 政策議題 設定에 관한 一般模型을 우리의 實情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安海均, 前揭書 참조.

동일되므로 消極的인 規制現象은 더욱 심각하다. 더구나 官僚內部의 昇進이 經濟成長政策에 대한 寄與度에 따라 결정되므로 政府規制는 언제나 成長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立案・實施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개, 企業의 行態의 特性이란 政府規制에 대해 積極的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못하도록 만드는 企業行態上의 問題點을 의미한다.

이를 要因들을 官依存의 企業成長이 초래한 副作用으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政府 등에 전가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企業측의 自體의 體質改善 노력이 너무도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政府의 規制에 順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일 企業活動이 國民의 충분한 支持를 받을 수 있다면 政府는 報復의 稅務查察, 準租稅 強要 등에 대해 충분히 對抗할 수 있었을 것이다. 政府가 아무리 강력한 規制措置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不當性을 주장하여 規制를 철회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네가지 媒介變數 가운데 政府內의 規制誘發要因은 이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Triggering Device의 내용이 되는 個別企業의 反社會的 活動은 對企業 Image와 企業의 行態의 特性에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對企業 Image를 巨視的 次元에서의 企業活動이 政府規制를 유발하는 要因으로, 企業의 行態의 特性은 微視的 次元에서의 企業活動이 政府規制를 유발하는 要因으로 보고자 한다.

III. 韓國企業에 대한 肯定的 視角과 否定的 視角 —巨視的 次元의 規制誘發要因—

. 政治圈과 經濟

企業人이 政治圈과 分離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 美國의 軍產複合體, 日本의 政官財複合體등은 그 代表의인 예로서 企業人과 政治圈은 서로 협력할 때 최대의 效率을 달성함을 보여준다. 美國의 경우 NASA의 事業計劃을 통해 수많은 新規 民間企業의 創設機會를 제공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政經癱瘓着이란 말에 대해 政治家와 企業人 모두 거부감을 느낀다. 그 이유는 企業의 경우 富의 蕊積過程이 正當하지 못하였고 政治圈은 正統性이 확립되었지 못하였기 때문에 政治人과 經濟人 모두 이를 肯定的 意味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듯하다.

(1) 富의 蕊積의 政治的 側面

1950年代까지만 하더라도 富의 形成過程은 그 당시의 時代的 狀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945년의 解放으로 美軍政이 시작되면서 日本人 所有財產중의 일부가 民間에 轉化되고 일부는 나중에 國營企業으로 되었다. 政治圈과 연고를 가진 경우 拂下資金은 銀行으로부터 特惠金融, 長期償還등이 뒤따랐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48년 政府樹立 이후에는 外國의 援助와 관련된 特惠가主流를 이루었다.

- 이러한 外國援助는 消費財中心으로 도입되었고 製糖, 製粉, 編織業에 企業活動 집중되었다. 現物為主였으므로 流通利潤이 富의 주된 源泉이 되기도 하였다.

1960年代는 借款導入에 따른 政治圈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借款의 交涉은 民間人이 담당하는 때도 있었으나 그 導入은 政府水準이었다. 採率의 폭등으로 이 당시의 달러貨는 導入 自體만으로도 富를 가져다 주었다. 新參企業뿐만 아니라 기존의 大企業도 主力業種의 性格과 無關한 分野에 참여하여 보다 많은 特惠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企業이 아무리 많은 負債를 지더라도 政府의 開發인플레이션 政策으로 總額면에서 자연적으로 實質的 減少를 가져왔다. 따라서 金融特惠 자체는 企業人の 전전한 行動樣式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1970年代에도 借款, 金融特惠에 따른 政治圈의 영향력이 여전하였으며, 증가된 租稅行政能力으로 稅務查察은 중요한 政府의 企業隸屬化道具로 활용되었다.

統治圈의 의사에 逆行할 경우 特別 稅務查察을 실시하여 企業人을 파멸시켰다. 반면에 政治圈의 의사에 順應하기만 하면 企業人の 創造的 努力없이도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이 당시는 好景氣였다. 특히 不動產投機가 절정에 이르렀던 때이다. 이때문에 단순히 富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生產活動에 참여하는 企業人과 投機活動에만 참여하는 富裕階層이 함께 社會의 批判의 對象이 되었다. 政府의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擴大로 立地를 둘러싼 政治力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企業人の 工場敷地는 經濟的인 投資機會의 判斷이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空閑地로 방치되는데 政府의 不動產投機抑制對策에서는 이러한 경우마저 政治的 判斷에 따라 投機與否를 판정하고 重課稅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政治圈과 결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正當한 富마저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商慣行상 租稅는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稅務查察, 각종 規制政策의 選擇的 執行 등은 企業을 政府의 從屬的位置로 固着化하는道具로 악용되었다.

1980年代는 政治的 激變期속에서 富의 蕁積보다는 기존의 富를 지키기 위해

企業의 政治圈依存이 더욱 심화된 시기이다.

새로 들어선 政府는 過去의 清算이 重複過剩投資의 除去에 있다고 보고, 政治力으로 經濟圈을 再編하려 하였다. 이 過程에서 再編의 基準은 經濟的 尺度가 아니라 政治的 尺度였으므로 企業들은 生存을 위한 政治力이 요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企業이 과다한 負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金融活動은 모든 企業에 필수적인데, 銀行이 統治圈의 영향하에 있는 狀況에서 政治의 依存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 政治一經濟關係의 再解釋

企業人이라면 zero-sum game은 회피할 수 없다. 그 對象이 政治圈일 경우 이 게임에서 勝者와 敗者는 엄연히 존재하므로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局限되지 않으며 모든 時代, 모든 國家에 공통적이다.

美國의 경우 0.1% 階層이 企業體資產의 60.8%를 소유하고 있고 大企業에 대한 Image도 否定의이다.⁶⁾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政治資金이 公開되어 있어서 政治圈과의 關係도 일종의 公式的인 企業活動의 일부이고 어느 쪽과 손을 잡느냐하는 것이 單純한 經濟的打算에 근거한 投資行爲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日本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하여 企業人은 非公式의 政治資金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反對給付도 은밀하게 받는다. 다만 準租稅와 같이 성격규정이 애매한 政治資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企業活動에서 zero-sum game이 불가피하다면 個別企業의 입장에서는 政治圈과의 협조가 企業成長에 필수적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政權交替라는 것이 없었으므로 惠澤이 편중되었고, 획득된 正當한 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不完全한 私有財產制度이므로 企業의生存을 위해서까지 政治力이 필요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政府主導의 成長戰略이 大企業에만 特惠를 주는 일방적인 支援이었다는 주장을 離點을 달리 하면 理解가 가능한 면도 있지 않다.

大企業 또는 既存企業 為主의 政策推進은 우선 政策의 執行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失敗하더라도 官僚의 利害關係를 저해할 危險이 적은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된다. 高級人力을 유치·보유할 능력도 大企業이 훨씬 앞서 있으며, 企業이 지속적으로 擴張·成長하는 것은 엄격한 市場經濟原理를 지킴으로써 倒産과 破産이 반복되는 것에 비추어 社會安定에도 도움이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6) Howard E. Aldrich,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9), pp. 42-43.

南北이 對峙하고 있으므로 社會安定은 國家存亡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政治圈과 결부된 企業活動을 부정적으로 보는 視角에는 은연중에 우리 사회
◦ 뿌리내린 權力爲主의 思考樣式 때문에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理想論이야 어여하였던, 權力은 富와 名譽를 수반하였고, 企業人
들로 富의 추구에 그치지 않고 權力과 名譽를 함께 가지려 하였다. 어떤 의미
에서는 이러한 企業人의 行態가前述한 富의 保障(富의 蓄積과 무관)을 위한
自救策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經濟人에 대한 韓國的
理想型이 경립되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價値가 多元化되고 權力과 富가 동등한 地位에 놓이며, 知識
과 技術을 통한 名譽 또한 이와 對等하게 될 때 이와같은 權力爲主의 思考方式
은 점차 소멸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社會의 各部門이 自律化되어 政府,
銀行, 言論, 學界 등이 각자의 倫理規範으로 움직일 때 정통성을 지닌 韓國型
企業人像도 가능할 것이다.

2. 企業의 社會的 機能

企業은 經濟的 人格體에 머물지 않고 全體社會를 위해서도 일정한 機能을 수
행해야 한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機能이 무엇이어야 하
는가에 대해서는 先進國에서도 學問上으로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연구되
기 시작하였다.⁷⁾ 이는 學問的인 研究를 뜻하는데, 이를 先進國에서는 이미 그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基督教的 教訓에 입각하여 社會에 대한 奉仕活動을 자연
스레 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傳統的으로 家族이 社會構成의 基本單位로
인식되어 企業經營 역시 家族主義的 傳統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
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란 낯선 主題임에 틀림없다.

(1) 富의 活用의 社會的 側面

우리론에 입각한다면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란 富의 活用, 즉 企業人이 正常
의 經濟活動을 하여 획득한 富를 活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非正常
의 經濟活動에 따른 社會的 逆機能은 좁은 의미에서의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는 분리되어 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좁은 資本主義의 歷史때문에 아
직까지 正常的인 經濟活動에 대한 合意가 결여되어 있고, 많은 경우 儒教的 傳
統에 따라 企業人의 行動規範을 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도 넓은 의

7) 李庸碩, 企業의 社會的 目的遂行과 組織成果間의 關係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pp.10-25 參조.

미에스의 社會的 責任問題를 史的으로 概觀하기로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失業率, 가난에 대한 오랜 經驗등으로 말미암아 가지지 않은 者와 가진 者는 區分이 어느 정도 되면서도 그들 집단간에 階層意識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儒教的 教理가 西歐的 Education의 内容에 우선하였으므로 富를 추구하는 企業活動을 道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企業이란 단순히 生存手段의 場에 불과하였다. 言論活動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非倫理的 企業行態를 빈번하게 보도되었으나 言論媒體의 普及不足으로 輿論形成에 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勞動의 過剩供給現象때문에 勤勞者에게는 職場과 生計維持가 동일시되어 勤勞者의 관心得 이에 머물렀고 企業인이 어떤 형태로 富를 축적, 활용하는가는 비교적 관심밖에 있었다. 이 당시에는 또한 政治·社會的 激變期를 틈탄 非正常的現象의 日常化가 이루어져 富의 活用에 대한 근로자들의 無感覺이 지배적이어서 의식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創業世代가 직접 企業을 경영하였으므로 이들의 勤勉·儉素한 생활태도가 勤勞者와의 긴밀한 紐帶關係를 형성케하여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企業人에 대해서는 社會全體의 1.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이르면 拜金主義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더욱이 가진 者와 가지지 않은 者 사이에 점차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富의 蓄積機會가 많아진 것도 그 원인이 되겠으나, 이것이 富의 活用에 따른 社會的 批判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富의 蓄積이 그만나 쉽게 이루어진 때문에, 그리고 企業家의 創造的 行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創業 1世代로부터 2世代로의 交替는 이들로 하여금 富의 무분별한 消盡으로 유혹하였다. 손쉬운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그만큼 쉽게 쓰여지게 마련이다. 한편 이 당시의 好景氣와 物價高로 勤勞者의 名目賃金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 중에서도 大卒出身에 대한 企業間의 採用競爭으로 事務職의 賃金은 더욱 높은 속도로 증가하였다. 好景氣에 따른 企業支出은 接待費, 營業附帶費用 등의 형태로 物質的 享樂을 조장하였다.

요컨대 1970년대에는 企業人과 勤勞者간의 위화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이것이 企業人을 포함한 事務職과의 갈등 관계였음은 최근의 勞使紛糾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전반적인 經濟水準의 向上으로 企業人の 消費行態보다는 오히려 政治狀況과 관련된 富의 蓄積이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즉 賃金을 둘러싼 勞使問題, 環境污染問題, 價格策定의 不合理性, 大企業의 中小企業에 대한 横暴, 그리고 政經癱瘓 등이 富의 蕩積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이러한 問題들이 광범위한 意味에서의 企業의 社會的 責任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政經癱瘓에 대해서는 앞의 政治圈과 經濟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IV에서 다루고자 한다.

(2)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再評價

위에서 간략하게 서술한 企業의 社會的 役割에 대한 否定的 誤解들은 그 모든 責任의 所在를 企業측에만 轉嫁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이 이들 問題가 우리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先進外國의 경우 이러한 問題는 오히려 더욱 심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들과 우리가 차이나는 점은 先進國의 경우 100년 내지 200년을 거쳐 順次의로 해결해 왔던 問題點들이 우리에게는 불과 10여년 사이에 분출하고 있으나, 先進國의 企業家들은 나름대로의 경협을 통해 行動規範을 정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企業人們은 政府의 庇護아래 안주하다가 갑자기 들출하는 문제점들 앞에서 行動規範을 미처 확립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變化하는 狀況에 대해 企業人們이 對應方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價值觀의 混亂現象이다.

國民들의 教育水準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行動規範이 함께 變化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教育內容과 行動樣式간에 커다란 差異가 존재하고 있다. 그 一의 責任은 教育者에게로 돌아가지만, 正當한 것과 正當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책임은 家庭과 社會, 國家 모두가 져야 하며, 過激한 示威가 企業人们的 부드러운 차취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企業人이 過正利潤下에 움직인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國民들의 意識水準은 向上되어 있으면서도 行動은 一貫性을 결여하여 民主社會에서는 존재해서는 아니될 過激行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이 企業人的 教育的 機能 및 地域社會 發展機能이다.

이들 兩者 역시 궁극적 責任은 教育者와 國家에게로 귀착되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를 企業의 役割과는 관련지어 논의한 자료가 전혀 없다. 특히 教育機能의 경우 企業이 채용한 勤勞者에 대한 自體教育만 강조되고 넓은 의미에서의 產學共同體意識은 결여되어 있다. 企業인이 필요로 하는 人力은 教育機

關으로부터 공급받고, 이들 勤勞者는 學校에서의 學習을 통해 行動樣式이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企業人은 오직 企業活動과 관련해서만 教育機關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教育機關에 대한 研究活動의 補助등을 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準租稅와는 전혀 무관하며 長期的으로 현재 企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순수하다고 할 정도의 美國式 理論에 의존하는 教育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美國일 수 없는 한 韓國人 내지는 우리의 行動規範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고, 여러가지 制約으로 이와 관련된 研究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현재 낙관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IV. 韓國企業의 行態上의 問題點

—微視的 次元의 規制誘發要因—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韓國企業에 대한 否定的 視角이 대두되는原因是 결국 企業人이 正常의 利潤追求活動을 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政府規制는 官僚利益때문에 유발되기도 하지만, 社會全體의自律性이 높아질수록 輿論의 壓力에 따라 어쩔 수 없이 規制措置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때도 있다. 우리의 경우 資本主義的 風土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게임의 規則이 확립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政府規制를 유발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때문에 政府規制의 縮小가 時期尚早라는 주장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볼 企業의 行態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나라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든 작든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前提해야 할 것이다.

1. 財務構造의 脆弱性과 不健全性

企業의 財務構造란 企業經營을 위한 資金의 조달과 운영에 관련된 여러가지 측면을 모두 지칭한다.⁸⁾ 따라서, 財務構造는 企業이 資本主義體制下의 生產活動의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근본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財務構造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이처럼 정의를 넓은 의미의 재무구조라고 규정하고, 資金調達의 측면만을 좁은 의미의 재무구조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民間企業의 재무구조의 불전전성은 운용의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兩者를 모두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1) 資金調達의 측면

a. 負債比率의 過多

企業의 負債比率이 계속 증가됨으로써 전반적인 財務構造의 악화를 선도하고 있다. 모든 산업의 중추인 製造業種의 경우 自己資本에 대한 負債比率이 1961년에 1.35배였던 것이 25년이 지난 1986년에는 3.5배로 대폭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표 1〉 우리나라 製造業種 民間企業의 財務構造 (단위 : %)

구 분	연 도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自己資本比率		42.4	45.9	20.2	21.5	18.1	22.2
他人資本比率		57.6	54.1	79.8	78.5	81.9	77.8
負債比率 ¹⁾		135.8	117.8	395.0	365.1	452.4	350.4

注1) : 負債比率 = $\frac{\text{타인자본비율}}{\text{자기자본비율}} \times 100(%)$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에서 재작성.

모든企業에 있어서 負債는 필요한 것이고 그 負債의 適正比率이 어느정도이어야 하는데에 대한 일치된 학설은 없다. 그러나 負債가企業의 정밀한 財務分析을 토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¹⁰⁾ 경기부침, 금리변동, 환율변동에 따라企業의 生產, 販賣活動이 너무 자주 수정되고, 倒產의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政府政策에의 의존도가 심화된다.

b. 特定企業들의 制度金融獨占과 中小企業의 私債依存度深化

資金調達의 源泉으로서 중소기업의 私債依存度가 높다. 이러한 현상은 몇몇 特定企業을 제외한 대다수의企業들이 制度金融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고들 주장한다. 몇몇 大企業들의 制度金融獨占은 公金利 수준에다가 對官, 對銀行協商費用을 합하더라도 私債利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계산에 의한 것일지 만 그것이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할 때에는 政府와 銀行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企業 財務構造의 脆弱性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私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制度金融의 장악이 훨씬 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政府에의 예속을 의미한다.

9)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10) 실제로 서울大經營研究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중소기업의 41%, 대기업의 21%가 지속적인 財務analysis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업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서울大, 經營研究所, 韓國企業의 現況과 課題, 서울大出版部, 1985, pp.393-395.

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련단체에서는 기업의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政策으로서法人所得稅率의 引下 등의 租稅政策과 公金利引下 등의 金融政策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그 정책이 과거에 그리效果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財務構造의 惡化가 金融制度, 稅制上의 企業外의 要因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企業擴張, 過多的設備投資, 企業倫理의 未定着, 財務管理能力의 결여라는 企業內의 要因에서도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부인할 것은 최근 公金利引下論을 주장하고 있는 企業이 많으나, 과거 우리企業들이 특혜성 公金利와 고율의 私金利라는 金利의 二重構造에 따르는 資源分配의 歪曲과¹¹⁾ 그리고 對官, 對銀行協商費用¹²⁾의 增大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公金利水準의 引下가 모든企業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기는커녕 私金利水準과의 더욱 벌어진 격차가 對官, 對銀行協商費用으로 흡수되고, 이러한 惠澤을 받지 못한 일부 기업은 私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어느 한에게도 유리한 결과가 되지 못한다. 公金利와는 상관없는 실질 高金利體系가 企業의 부채의존도 심화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c. 係列企業間의 相互出資. 內部來比率의 과다.

우리나라 企業의 資金調達方式은 대체로 借入(62.7%) 社內留保(26.6%), 株式發行(10.7%)의 세가지에 의존하고 있다.¹³⁾

그 중에서 株式發行에 의한 資本調達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그 비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方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특히 재벌기업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구조는 母企業—子會社—孫會社라는 單線的 형식으로는 그 실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계열기업 간의 중복투자, 상호출자는 그 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실제 財政動員ability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무리한 事業施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國民經濟의 측면에서 企業의 投資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 政府의 立場에서 보면, 企業의 실질적 재무구조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또한 소수의 創業者家族의 적은 자본으로 그룹전체의支配¹⁴⁾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계열기업 간 상

11) 崔洸, 河泰亨, “韓國企業財務構造 決定要因에 관한 理論 및 實證的 考察” 韓國開發研究, 第6卷 第2號(1984, 여름) p.202.

12) 그런 것도 일종의 準租稅에 해당한다.

13) 稅制發展審議會, 稅制發展研究報告書, 1984, p.586.

14) 企業가족은 이런 방식의 주식소유를 통해 그룹 전체 주식의 30~50%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호출자를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뒤엉킨 계열기업간의 관계는 民間企業의 재무구조의 不健全性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재벌기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그룹내 内部去來의 比率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 財務運用도 그룹의 차원에서 일체관리의 형식을 취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이런 재무관리방식이 반드시 재무구조의 취약성, 불건전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反論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재무운용이 틀속에서 이루어지는 資金調達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계열기업간의 未受金 동향, 보험료 명목의 資金移轉 등의 편법적인 방식이 규제받지 않으면 國民經濟秩序에 혼란이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資金運用의 측면

a. 非業務用 資產에 대한 投資

原論의으로 말해 企業의 역할은 生產의 주체에 국한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의 生產은 財貨 뿐만 아니라 用役의 생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資金運用의 측면에서 볼 때, 企業資金이 이런 목적외에 투자되었을 경우 그 企業의 재무구조는 不健全한 것이다. 企業資金이 生產活動과 관련없는 非業務用資產에 투자되는 것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근거는 현실적으로 企業資金이 그러자 명목의 特惠性 支援¹⁵⁾에 의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現實論과 산활동에 투자하지 않는 企業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理念論의 兩者를 축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企業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와 그를 위한 비용의 극소화 있다고 설명되지만, 그 목표의 정당성은 生產活動과 관련되었을 때에만 확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資金運用은 넓은 의미의 生產活動과 관련되었을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理念과 우리나라 民間企業의 資金調達이 借入, 특히 政府 및 銀行 등의 特惠性支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規制가 수반되는 現實을 고려해보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企業들의 非業務用資產, 특히 기동재에의 투자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政府의 規制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技術水準에 관련된 문제점

(1) 技術開發努力의 미흡

企業의 技術水準向上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필수적인 企業存續條件이

¹⁵⁾ 그 대표적인例가 수출지원금융이다.

된다. 국내의 다른 기업, 외국기업과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벼텨나갈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製品의 質을 유지하고 改善하기 위한 技術水準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서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國內企業의 自體技術開發과 外國企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을 들 수 있다.

先進國과는 달리 우리와 같은 開途國의 입장에서는 民間企業에 무리한 自體技術開發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先進國으로부터導入된 기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소화시키고 개량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향후 독창적인 기술개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한 기본적 시각을 토대로 할 때, 우리 民間企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부담을 이유로 自體技術開發의 노력이 미미하고, 先進技術의 도입을 자체=준의 향상으로 연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 民間企業의 研究開發費의 推移를 통해서 自體技術開發에 대한 노력을 가능해보면, 그 投資絕對額의 미미함에 놀라게 된다. <표 2>에서 보듯이 전체 民間部門의 연구개발비의 투자액은 1985년의 경우 9,300억 원에 불과해서 전체 國民總生產 72조 8,500억 원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美國(83년)의 2.65%, 日本(83년)의 2.33%, 서독(83년)의 2.80%에 비해 비율로도 작지만, 그 絶對額面에서는 선진국의 $\frac{1}{15} \sim \frac{1}{110}$ 에 불과하다.¹⁶⁾

<표 2> 年度別 研究開發費의 推移

(단위 : 10억 원)

연도	구분	국민총생산	연구개발비		
			총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1976		13,881	60	39	21
1977		17,728	108	52	56
1978		23,936	152	74	78
1979		30,741	174	95	79
1980		36,672	211	109	102
1981		45,126	293	128	165
1982		50,724	457	189	268
1983		58,985	621	171	451
1984		66,408	833	178	655
1985		72,849	1,155	225	930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7, p. 252.

16)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產業技術白書, 1985, pp. 41-42.

이것을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되는 電子產業에 국한시켜보면, 116개 관련회사의 순수시험연구개발비는 83년도에 70억원에 불과하여 총 매상고 5조 3천여 억원의 0.015%에 머물고 있음¹⁷⁾에서 民間企業의 技術開發努力이 부진함을 알 수 있다.¹⁸⁾ 이런 정도의 研究開發投資水準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產業에서 핵심적인 시스템 설계를 제외하고는 큰 발전을 이룩했다는 企業들의 발표¹⁹⁾에 놀라울 뿐이다.

다음으로 우리와 같은 開途國에서 현실적으로 유용한 先進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의 문제가 있다. 自體技術開發이라는 先進國型의 技術發展과는 달리 현재 우리의 경우 더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개발된 技術을 어떻게 우리의 실정에 맞게 土着化시킬 수 있느냐는 것²⁰⁾인데, 많은 조사 연구결과를 보면導入된 技術本身 質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즉, 1978년 이래 5단계에 걸쳐 점차 技術導入의 自由化가 이뤄되고 그에 따라導入件數와 그 代價支給은 급증하고 있으나(표 3 참조), 企業間技術導入의 重複, 落後技術의導入, 技術導入을 위장한 단순한 商標權의導入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技術水準의 향상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표 3〉 年度別 技術導入 認可 및 代價支給現況

(단위 : 件, 100萬弗)

	件 數	代價支給額		件 數	代價支給額
1962~66	33	0.78	1980	222	107.25
1967~71	285	16.26	1981	247	107.10
1972~76	434	26.51	1982	308	115.69
1977	168	58.06	1983	360	149.50
1978	296	85.07	1984	432	213.23
1979	288	93.93	合 計	3,073	1,043.35

資料：財務部。

17)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4.

室谷克實, 한국인의 經濟學, 백양출판사, 1987, p.117.

18) 물론 해당 企業에 연구개발비라고 주장하는 대역에는 人件費와 建設費까지 포함하는데 그 모두를 포함하면 電子產業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2,540억원에 이르고 매출액 對比 3.5%가 된다.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產業技術開發實態調查, 1986, 10 pp.31-34 참조.

19) 1987.1.15~16일 개최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체의 산업기술개발 심포지움에서 행한 각 企業人們의 발표.

20) 그간, 철강, 나일론,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과정에서 外國技術의 소화·흡수가 이들 산업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朴宇熙, “한국에 있어서의 輸入技術의 吸收와擴散에 관한 實證分析,” 經濟論集, 서울大經濟研究所, 1980.6 참조.

學術에 따라서는 民間企業의 重複技術導入과 落後技術導入을 禁止하는 것이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政府의 規制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²¹⁾ 기업간 重複技術導入으로 인한 과당경쟁의 錐害—外國企業의 高姿勢, 技術移轉代價의 상승 등—to 고려하고, 技術移轉 없는 단순한 商標權導入, 落後技術導入에 만족하는 것이 企業 자신의 장기적 발전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企業相互間의 協商을 통한 과당경쟁의 自制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企業의 입장보다는 전체 기업,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政府가 이에 대한 規制를 소홀히 하면, 쏟아지는 消費者의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政府規制가 招來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한국 技術의導入과 自體技術開發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각 企業은 利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 질 것이지만, 政府 및 國民은 社會의 福祉 및 國際收支, 技術擴散이라는 外部效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兩者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 때의 調整方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導入技術의 質이다. 즉, 國內產業의 發展段階에 비추어서 꼭 필요하라고 생각되는 核心技術의 移轉에는 기업간의 重複여부에 상관없이導入을 장려·나되, 그렇지 않은 落後技術이나 단순한 商標權導入은 억제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난 20여년간 지급된 技術導入費用이 1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큰 誤算이다. 企業의 입장이든 國民經濟의 입장이든간에 현재로서 가장 우려해야 할 문제점은 先進國에 대한 技術從屬의 深化現象이다.

開途國의 경제발전에 관련된 자본 및 기술종속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두가지의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低發展의 원인을 開途國 자체의 内的인 요소에 있다고 보는 로스토우, 허쉬만 등의 後進國 開發理論이고, 다른 하나는 低發展의 원인을 開途國이 先進諸國의 植民主義나 帝國主義에 의한 國際分業의 과정에서 종속적으로 편입된 결과라고 보는 그랑크, 왈러스타인, 아민 등의 從屬理論과 周邊部資本主義論이다.²²⁾

21) 池龍熙, 李元喨,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政策方向” 韓國開發研究, 제 8 권 제 1 호 (1986, 春) pp.11-19.

22) ① André G. Frank, Dependent Accumulation and Under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②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③ Samir Amin, Neocolonialism in West Africa (London: Penguin, 1973)

여기서 어느 理論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으나,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전적으로 後進國 開發理論에 입각해서 外國資本과 技術의 導入을 주축으로 한 수출주도형의, 그리고 總量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채택해 왔음을 상기한다면, 우리와 같은 開途國의 입장에서 주장된 從屬理論의 관점을 읊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國際分業의 과정에서 開途國들이 독립성과 능동성을 갖여한 채 先進國이 설정한 역할²³⁾만을 수행한다면, 總量의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開途國의 對外從屬은 심화된다. 그러므로 우리企業들도 장기적으로 外國資本 및 技術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先進國 技術導入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利害得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과거 엔高現象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日本。 대한 技術從屬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²⁴⁾ 단기적 利潤에 집착한 技術導入은 그 導入技術을 土着化하고 核心技術開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그企業과 그를 토대로한 國民經濟의 운명을 外國企業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政府의介入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와같은 對外技術從屬의 深化는 수입의존적 산업체질²⁵⁾을 장기화함으로써企業의 對外競爭力を 약화시키고 製品의 國產化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표 4〉에서 보듯이 1985년도의 기계류, 부품, 소재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이르고 있는데, 부품 조립가공형 위주의 중화학공업화에企業이 스스로 安住하게 되면 소재, 부품공

〈표 4〉 기계류·부품·소재의 수입비중(1985)

(단위 : 백만달러, %)

	금액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계류	3,952	13.1
부품	3,976	13.1
소재	4,787	15.8
총계	12,715	42.0

資料：政府，行政白書，1987，p.190。

23) 즉 선진국의 상품시장인 동시에 그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며, 수명이 다한 낙후 기술의 移轉場所가 되는 것。

24) 日本으로부터 移轉받은 기술의 대부분은 핵심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技術導入으로는 제조과정에서 日本部品의 輸入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5) 이러한 요인으로 산업설비 및 기계류의 국산화율은 산업설비 평균 52%，기계류 평균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기계요소부품의 자급도도 현재 60%에 불과하다.政府，行政白書(1987)，p.190。

업의 구조적 취약화를 초래하여 產業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므로 政府의 直接的介入은 아니더라도 부품, 소재의 국내개발을 위한 다방면의 政府規制가 필요하기 된다.²⁶⁾

(2) 각 企業의 專門領域 구축 노력부진

우리나라 企業들의 특징은 創業 당시 하나의 分野로 시작했더라도 몇개의 系列企業群을 거느린 大企業으로 성장하면 축적된 技術水準과는 관계없이 業種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企業은 多數產物 및 多工場企業의 비중이 크고 商品多邊化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技術水準의 向上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技術水準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總要素生產性 比較를 통한 製造業部門에 대한 일부 研究²⁷⁾에서 中小企業의 總要素生產性 增加率(기술수준증가율)이 오히려 더 높아서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技術水準의 격차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에 발생하는 生產量의 격차는 대부분 中間投入物 및 資本投資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大企業의 生產이 附加價值가 훨씬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各企業들이 거대화되더라도 商品多邊化보다는 자신들의 專門領域을 확보,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면, 그 재벌기업이 特化度²⁸⁾가 높아지게 되며 그것은 곧 技術水準의 向上과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專門領域의 구축노력과 特化度의 向上, 그리고 그로 인한 技術水準의 向上来 조장해야 한다는 것과 政府規制와 연결시키는 論理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은 輸出위주의 대외지향적 산업체계내에서는 부가가치의 增大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즉, 特化度, 專門領域의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26) 실제로 일부 대기업에서는 국내부품의 개발이 수입에 의존하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의 부품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되므로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政府의 支援 및 統制가 필요하다.

27) 金載元,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技術水準比較, 韓國開發研究, 第6卷 第2號, (1984, 여름), pp.217-223.

金載元,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總要素生產性比較, 韓國開發研究, 第6卷 第1號, (1984, 봄) pp.38-57.

28) 特化度 = $\frac{\text{主產業이 } X \text{인 企業들의 } X \text{出荷額}}{\text{主產業이 } X \text{인 企業들의 總出荷額}}$

이 特化度가 높을수록 특정산업의 기업들이 주산업의 생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專門領域의 구축과 직결된다.

증대가 없이는 총량적 수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국민경제의 성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같이 수출진흥에 많은 정부지원이 있는 국가도 드물거니와 그런 혜택을 받는 기업이 부가가치의 증대를 위한 노력에 무관심하다면 규제를 招來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소수 대기업에 의한 商品多邊化와 多工場企業의 증대를 통해서 一般集中現象이 심화되면 곧 經濟力集中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政府規制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3. 企業의 對消費者關係

(1) 價格決定의 不合理性과 費用轉嫁式 管理

企業의 生產活動의 결과인 製品의 價格에 대해서는 企業과 消費者간에 항상 相反되는 利害關係를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價格決定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企業이므로 소비자는 기업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불만족하면 거래에 응하지 않는 소극적인 반응밖에 보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生產된 製品 및 用役의 價格決定은 정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하여 合理的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消費者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企業의 확실한 利潤을 보장해 줄 수 있다.

價格을 결정하는 變數로서는 임금, 원재료비용 등의 直接費用, 生產의 效率性(勞動生產性), 市場의 狀況, 利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企業이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 모든 變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企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變數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결과를 가격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약하고, 전통적인 費用極小化 管理보다는 費用轉嫁式 管理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首先, 價格決定의 變數 중에서 임금, 원재료 등의 直接費用, 利潤을 算定하는 작업은 별 문제가 없으나 市場狀況과 生產性이라는 변수를 측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產業別, 業種別 労動生產性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企業에 있어서 平均的으로 年 13%정도의 労動生產性的 지속적增加를 보이고 있음²⁹⁾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費用轉嫁行態는 지속되어 왔다. 이것은 과거의 지나친 政府主導型 經濟運用의 기조속에서 特惠的性格의 支援을 통해 탄생하고 성장했던 企業들이 費用極小化 經營에 집착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政府支援을 획득하려는 補助極大化 經營을 선호하기 때문이

29.) 洪炳裕, 經濟安定化政策과 企業經營의 改善(韓國開發研究院, 1983) p. 49.

다. 이런 경영방식 하에서 이미 확보된 지원은 既得權化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원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새로 對政府協商費用이 증대하게 되기 때문에 낮아진 利潤率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消費者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사실 企業이 補助極大化 經營을 추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 費用極大化 經營을 동시로 추구할 수도 있다는 反論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補助極大化 經營에 의존하는 企業은 이미 費用極小化 노력을 포기한 상태임에 주목한다면, 補助極大化 經營과 費用轉嫁 行態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企業들의 이러한 行態가 반드시 企業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즉, 企業들의 견진한 費用極小化 노력이 정착되기도 전에 강력한 政府의 規制와 支援에 큰 영향을 받았던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책임소재를 떠나서 현재 기업들의 補助極大化 經營은 한편으로는 對政府協商費用의 증대와 補助에 따르는 政府의 規制를 계속적으로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정 利潤率을 확보하기 위해 對政府協商費用을 소비자에게 轉嫁시키는 형태가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을 누적시킴으로써 政府規制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³⁰⁾

(2) 生產製品에 대한 信賴度提高 노력의 부족

앞에서 언급했던 製品의 價格은 消費者의 최대 관심사이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製品의 品質, 販賣後 管理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製品의 品質은 정밀성, 디자인, 수명 등과 특히 관련되는데, 그것은 企業의 技術水準과 技能人力의 質에 의해 좌우된다. 문제는 현재 技術水準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企業主와 技能人 모두가 정밀도에 그리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³¹⁾

사실 技術과 製品의 상호관련성은 研究開發단계에서부터 製品의 生產단계까지 전 과정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단계에서 아무리 技術水準의 向上이 이루어졌다해도 製品을 실제로 생산하는 技能人力에 대한 教育이 미비하

30) 이런 발상은 분석의 틀에서도 논의했듯이 企業活動이 바로 정부규제를 유발하는 것 아니라 관련 公衆의 對企業 이미지에 따른 소비자 운동의 전개과정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정부규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31) 우리나라의 企業중에서 정밀도가 요청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중에서 정밀표준설정을 갖추고 있는 비율은 36.3%, 실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비율은 겨우 5%라고 한다. 中央日報‘1984.4.25字社說’

11 生產過程에서 정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品質管理作業이 소홀하다면,³²⁾ 消費者的 信賴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의 제품을 한 기업만이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企業製品간에 互換性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품의 規格과 品質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은 政府 또는 企業間委員會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品質 및 規格에 대한 政府規制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消費者的 欲求를 대변하는 역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品質에 관련된 費用增加를 政府規制費用으로 간주해서는 안되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生產費用으로 미리 計上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自律的 品質管理 基盤이 조성되면, 消費者的 企業에 대한 호의적 반응으로 연결되고 기업이 주장하는 政府規制의 縮小論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消費者的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政府規制와 연결되는 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4. 勞使關係

(1) 勞動生產性의 분석과 賃金決定상의 問題

현대의 產業社會에서는 賃金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접 生產活動을 통해서 勞動力を 제공하는 生產勞動者(productive labor)³³⁾에게는 노동력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의미외에 최저생계비의 보장수단이라는 더 결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企業의 입장에서는 勞動力에 부합하는 賃金을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 勞動者들의 임금은 事務職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현재의 賃金이 製品價格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적당한가 하는 전면적인 검토없이 막연히 임금인상의 폭을 제품가격의 인상폭과 직결시켜버리려는 觀念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의 賃金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賃金決定基準으로서 몇 가지 變數를 선정해야 한다. 그 예로서 중요한 것은 勞動生產性, 生計費, 支拂能力 등인데, 우리 企業의 경우 주로 支拂能力과 物價指數에만 賃金을 연동시키려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근로자의 실제 生計費가 어느 정도이며, 勞動生產性的 增加分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分析을 토대로 예비적으로 임금이 산정되고 난

32) 서울大經營研究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製造業體의 生產品 平均 不良率이 2%를 넘는 기업이 전체의 반수를 넘는다고 한다. 서울大經營研究所, 韓國企業의 現況과 課題(서울大出版部, 1985), p.371.

33) 굳이 生產勞動者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넓은 의미의 근로계층에서 그들을 구별하려는 의도이다. 勞使關係에서 주요 對立的 主體가 되는 것은 事務職이외의 生產勞動者와 企業主이기 때문이다.

후에, 支拂能力과 物價水準을 토대로 勞使間에 協議를 통해서 임금을 조정한다면 勞使紛糾의 소자는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賃金 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公開主義가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³³-企業에서 勞使紛糾와 그로 인한 賃金 상승이 製品原價에 압박을 주는 코스트 푸시(cost push)의 要因이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주장이 일면타당성이 있으니, 그것은 事務職—특히 大卒事務職—의 임금에 주원인이 있으며 실제 生產勞動者의 임금은 그 원인이 아니다. 부연하면 다음 <표 6>에서 보듯이 製造業種과 관련 취업자 216만여명의 약 75%를 차지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이 나무적 관련종사자의 66%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관리직종사자에 비해 30%밖에 안되는 현실속에서 비용상승의 요인을 生產職의 賃金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1981년도 全都市 家口當月平均 消費支出을 살펴보면 322,558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³⁴⁾ 이는 家口當 취업인원수가 평균 1.17명³⁵⁾인 현 상황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서비스직과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계수지 赤字가 펼연히 있을 의미한다.

직종 간의 임금격차는 우리의 경우 그 원인이 주로 학력에 있기 때문에,³⁶⁾ 생산직근로자들이 자신들의 長期勤績과 經歷을 토대로 하여 技能蓄積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규야간학교라도 다녀서 기회만 있으면 事務職으로 변신하려는 動因을 제공하게 된다.

<표 5> 제조업의 직종별, 성별 근로자수와 월평균 임금(1985. 3)

	월평균임금(단위: 원)			근로자수(단위: 명)		
	계	남	여	계	남	여
전 직 종	225,185	286,939	140,974	2,163,427	1,247,138	915,289
전 동 기 술 직	356,528	364,248	247,766	85,890	80,197	5,693
행 장 관 리 지	636,920	637,383	586,061	56,773	56,261	512
사 무 직	284,835	342,356	167,207	327,223	219,759	107,464
판 매 직	330,717	360,201	200,367	8,354	6,813	1,541
서 스 직	196,627	219,624	150,480	48,564	32,412	16,152
생 산 직	192,370	244,219	136,000	1,636,119	852,231	783,888

資料：勞動部, 勞動統計年鑑(1986), pp. 222-223에서 再作成.

34)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1987), p. 203.

35) 勞動部, 勞動統計年鑑(1986), p. 316.

36) 이와 같은 추론은 大卒社員의 경우 그들의 직종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임금격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와같은 二重構造的 勞動市場(dualism in labor market)³⁷⁾ 하에서는 生產職의 賃職率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平均勤續年數가 韶아 企業의 충분한 技術蓄積이 곤란하며 製品의 品質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와같은 최초의 임금수준을 生計費와 勞動生產性을 토대로 하지 않고 學歷을 토대로 하여 慣行의으로 정한 후에, 임금상승은 企業의 支拂能力과 物價指數를 토대로 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임금격차의 해소가 어려운 것이다.³⁸⁾ 결국 勞動生產性에 의해 원천적으로 높게 설정된 事務管理職의 임금이 비용상승요인임을 각 기업들이 차각해서 賃金體系再編作業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항상 勞使紛糾 발생의 소지가 남게 되며 賃金決定에 政府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언하면, 生產職勞動者의 賃金上昇이 「코스트 푸쉬」의 주요 要因이 된다는 가정하에 企業이 生產職勞動者의 勞動組合을 기피하는 것이 70년대부터 시작된 勞動運動의 해결을 기피해왔고 低賃金政策의 클간을 벗어나지 못했던 4,5共和國政府에서는 가능했었을지 모르지만, 意識化된 勞動者集團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큰 세력화될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리한 企業行態가 企業經營 자체를 곤란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상대적 파ing인구에 의한 單純生產勞動力의 공급과 잉과 政府의 단기적 수출드라이브 政策이 맞아 떨어져 生產職의 低賃金體系³⁹⁾가 유지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先進國들이 그러한 低賃을 통한 輸出을 사회적dumping(social dumping)으로 규정하여 自國의 무역관계위원회에 提訴하는 事例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과 勞動者階層이 큰 목소리를 가진 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노동문제가 단순히 勞使間의 문제가 아니라 政治, 社會問題化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生產勞動者의 賃金問題는 단순히 企業內의 문제가 아니라 國家의 次元에서 論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企業들이 스스로 勞使問題를 해결하려는 勞使自治主義原則을 확립하지 않고 막연히 政府

:7) Glen Cain은 노동시장이複數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segmented labor markets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Glen Cain, "The Challenge of Segmented Labor Market Theories to Orthodox The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4, No. 4, pp. 1215ff.

33) 同旨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金秀坤, 韓國勞使關係의 特徵과 所得平準化政策, 韓國開發研究, 第5卷 第3號 (1983, 가을), pp. 2-18.
- ② 全基浩, '노동문제의 구조와 대책,' 韓國經濟의 現段階, (서울: 사계절출판사, 1985) pp. 308-326.
- 33) 과거 政府의 목인하에 이루어졌던 低賃金體系는 ① 노동문제의 정치문제화를 꺼렸기 때문에 그 근본원인에 관계없이 노동운동 및 노동쟁의를 억압했던 정부정책과 ② 도시빈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산물수입과 저곡가정책을 토대로한 낮은 농산물가격의 유지, ③ 그로인해 파탄에 빠진 농촌으로부터의 離農現象이 심화되었고 따라서 산업에비군의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의介入을 요청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정부의介入을 통한勞動問題의 해결을 바라는企業들의 자세가 바로 지난친政府規制를 초래하게 된 한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企業이勞使問題의 자체해결을 기피해서政府의 관여를 불러일으킬수록企業의自律性은 약화되는 것이다.

(2) 기타勞務管理상의 문제

勞使關係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賃金問題에 労動者の厚生福祉문제 등도企業과 労動者の 마찰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労動者들의 교육수준, 의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그것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넘어서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의 일년간 行政業務를 결산하는 行政白書를 보면, 자신들의 民間主導經濟體제를 확립하겠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企業의 労務management를 行政府가 다 떠맡겠다는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昨今의 치열한 労使紛糾 발생원인은企業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처음에는 最低賃金制 실시,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개선, 후생복지시설의 활충,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등의 原論의 차원의 원인때문에 발생했던 労使紛糾는政府의 개입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그로인한 損失은企業이 부담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労使紛糾의 격화원인은 노동문제를企業的次元으로 소화시키려 하지 않고 政治的次元으로 이끌고 감으로써 労動者들에게企業에 대한 불신감만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자율에 바탕을 둔 労務management의 정립으로 労動者들을 對話의 場으로 끌어들이는 것이政府規制를 궁극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명분을 기업에게 제공해줄 것이다.

5 大企業의 經濟力集中

최近에 들어서서 國民들사이에 獨占的大企業, 특히 財閥企業에 대한 批判이漸增하고 있다.⁴¹⁾ 그것은 재벌기업으로의 經濟力集中現象이 國民經濟에 긍정적

40) 政府, 行政白書(1987), pp.305-316. 그러나, 현 정부의 노동문제, 노사분규를 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政府介入에 의한 노사분규해결은 진정한 의미의 문제해결이라기보다는 억압에 의한 노사문제의 잠재화에 불과하기 때문에勞使問題와 관련하여政府의 규제만을 중대시켰을 뿐 장기적으로는企業利益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1) 大企業과 財閥企業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흔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大企業이 모두 財閥企業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

이 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는 판단을 토대로 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입장에서는 規模의 經濟, 資本形成과 技術蓄積상의 이점 등을 내세워 系列企業의 擴張을 통한 재벌화가 企業 및 國民經濟에 유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是非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世間에서 대두되고 있는 비판을 토대로 政府의 規制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政府規制를 유발한 原因은 무엇이고 規制를 축소할 수 있는 企業의 對處方案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財閥企業에 대한 世間의 비판은 그들이 自力으로 生成, 發展했다기보다는 정부의 각종 특혜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에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민의 비판과 그로 인한 政府規制의 誘發要因을 ① 企業擴張 背景과 方式에 있어서의 문제 ②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企業擴張의 背景과 方式에 있어서의 문제

그동안 온 국민과 정부가 지불보증을 선導入外資나 銀行貸出이 특정 재벌기업에 집중 배정되었음을 周知하고 있는 국민들은 그 배정의 기준이 衡平의 原則에 어긋났다고 주장한다. 즉, 國民經濟的 次元에서의 產業發展보다는 不均衡成長論의 가치아래 權力層과 밀착된 人士에게 배정됨으로써, 특정 인물의 企業이 國民經濟에의貢獻與否와는 상관없이 成長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企業擴張의 배경 속에서 안주한 企業들은 더욱 權力層의 動向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을 국민들은 政經癮着이라는 시각에서 보게 된다. 불행히도 과거 政府가 항상 正統性是非에 휘말렸던 不信任政府였기 때문에 그와 밀착된 企業은 좋게 評價될 리가 만무했다. 따라서, 企業들은 特惠를 베푼 權力層에 대한 反對給付로서 각종 出捐과 寄附를 했을 뿐만 아니라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요구하는 輿論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보여왔음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微微해서 國民들은 더욱 재벌기업에 대한 政府規制壓力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企業의 擴張過程에서 생겨난 좋지 않은 對國民의 이기지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야만 政府가 國民의 要求를 토대로한 規制의

이는 우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大企業이 재벌기업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명분을 제공하지 않게 된다.

‘企業은 生產主體로서 正當하고 良質의 製品과 서비스를 이 社會에 提供하고 利潤을 蓄積하여 擴大再生產함으로써 雇傭創出과 國民所得의 向上 및 企業의 維持發展에만 힘쓰면 된다’는 企業人의 생각⁴²⁾에 더하여 일반국민은 權力層에 밀착하지 않는 企業의 擴張을 正當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企業擴張의 方式이 문제가 된다. 재벌기업들이 주장하는 規模의 經濟, 資本 및 技術蓄積의 이점이라는 것이 현재의 企業擴張方式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規模의 經濟性이란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정비용의 압력이 낮아져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論理이다. 그러나, 이 論理는 同種의 生產品을 만들어내는 生產制模 확장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業種이 다른 系列企業의擴張이나 多工場體制로의 擴張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⁴³⁾ 따라서 大企業이 規模의 經濟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工場 및 지나친 商品多邊化의 지양, 專門領域의 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요컨대 대기업,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의批判은 ① 그 기업 자체보다는 일부 權力層과의 密着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점과 ② 국민이 大企業에게 바라는 것, 즉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외연한 채 外面的이고 量的 팽창을 선호하는 系列企業群의 확장방식을 거부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언하면 大企業의 經濟力集中이 總量的 成長을 가져온 國民經濟의 能率化라는 관념은 충족시켰지만, 分配의 正義를 실현해야 한다는 國民經濟의 衡平化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政府規制의 必要性을 대변해주고 있다.

(2)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관계

大企業의 經濟力集中이 문제가 되는 것은 中小企業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고유역할의 정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兩者간의 타협에 의한 去來關係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大企業에 의한 횡포가 종종 나타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서는 下都給去來와 中小企業適合領域이라는 측면에서 보기로 한다. 都給去來란 母企業(primary company, contractor)과 受給企業(specialized

42) 全國經濟人聯合會, 民間經濟白書(85년판), p. 40.

43) 司旨의 견해를 朱宗桓, 財閥經濟論(서울:正音文化社, 1985) 등에서 찾을 수 있다. 朱教授는 이런 의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財閥의 분할을 주장하기도 한다.

subcontractor)간의 契約에 의한 生產分業體系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生產의 分業體系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면 產業構造의 高度化로 연결될 수 있다.

資本集約的이고 技術集約的인 產業일수록 이러한 都給去來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中小企業의 육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경제전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資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都給去來가 장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都給去來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政府의 관여는 필연적이다. 문제는 왜 하필이면 母企業 위주로 政府規制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都給去來에 있어서 母企業이나 受給企業 모두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⁴⁴⁾ 그러나, 母企業이 受給企業을 거의 자의적으로 선정할 우월한 위치에 있으므로, 受給企業들의 專門性 결여, 原材料不良, 經營未熟 등의 문제점은 母企業이 열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 受給企業을 지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 옮기거나, 아니면 受給企業을 변경시키거나 하는 여러 代案중에서 하나를택하기만 하면 된다. 반면, 受給企業은 母企業으로부터의 부당한 納品價格引下要求, 付金決済의 지연, 요구하는 규격, 품질의 잣은 변경, 不規則的 注文에 대항할 힘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受給企業—주로 中小企業—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分業體系가 깨져 產業構造의 高度化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大企業의 입장에서는 受給企業과의 去來關係에 政府가 끼어드는 것이不合理하며 自由競爭體制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不公正한 都給去來에 대한 政府의 規制는 대기업과 정반대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受給企業의 집단적 로비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企業간 마찰이 政府規制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大企業은 受給企業의 도산을 막고 주로 受給企業이 담당하는 部品 및 零材產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안정적 원료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受給企業과의 정당한 去來를 통한 協調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政府의介入을 배제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사실 都給去來에 참여하는 中小企業이 전체의 40%가 넘고 있으며(〈표 6〉 참조) 都給去來의 정상화가 中小企業適合領域⁴⁵⁾에 大企業이 進入하는 것을 억제

44) 金裁元, 趙振衡, 都給組織의 實態와 對策, 韓國開發研究, 第4卷 第4號(1982, 겨울) pp.192-193.

45) 이것을 法律에서는 中小企業固有業種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본래적으로 固有業種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자는 이러한 表現을 사용하였다.

〈표 6〉 전체 中小企業中 受給企業의 比重 (단위 : %)

구 분	년 도	'76	'78	'80	'82	'84	'85
受給企業數		4,556	4,666	9,224	12,149	15,841	17,020
受給企業이 中小企業에서 차지 하는 비율		19.7	18.2	30.1	33.9	41.6	42.0
受給企業이 中小企業出荷額 에서 차지하는 비율		20.4	15.5	25.6	36.2	41.6	39.0

資料 商工部, 中小企業實態調查報告書, 各年度에서 재작성.

해줄 \therefore 있다는 관점에서, 都給去來 正常化를 위한 規制나 中小企業適合領域에 대한 大企業의 進入을 規制하는 것은 銅錢의 表裏와 같은 것이다.

6. 企業의 社會的 責任意識—外部不經濟에 대한 補償意識缺如—

企業活動은 항상 國民經濟에 公正적 영향(外部經濟)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外部不經濟)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外部不經濟에 대한 맷가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外部不經濟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環境汚染인데, 이러한 公害,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企業이 부담해야 한다는 論理가 바로 政府規制 當爲論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企業의 投資에 대한 公正론과 부정론적 시각⁴⁶⁾은 팽팽히 대립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經濟的 厚生, 便益에 뭇지 않게 폐적인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社會的 厚生에 대한 강조경향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先進國에서는 외부불경제를 초래한當事者에 의한 民間部門投資가 늘어나고 있으며, 國民의 租稅負擔에 의한 정부부문 투자는 外部不經濟를 발생시키는 者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者가 달라지게 된다는 衡平의 문제 때문에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의 경우도 공업의 발달에 따라 產業廢水, 產業廢棄物, 大氣污染의 문제 가 심화해지고 있는데 企業主들의 意識이 아직 제고되어 있지 않아서, 환경오염방지 를 위한 努力과 投資⁴⁷⁾에 극히 인색한 편이다(〈표 7〉 참조). 환경투자는

46) 환경보존대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물가안정을 저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國民總厚生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公正론과 인플레유발, 企業의 투자를 生產目的外로 전환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부정론이 있다.

47) 우리나라 企業들의 產業設備投資중에서 環境污染防治을 위한 設備投資는 약 0.4%

〈표 7〉 環境汚染 中央指導 點檢班 點檢實績

년도		84	85	86
점검대상		2,269	2,909	4,042
점검건수		5,811	10,342	13,067
정상		4,539	8,657	11,178
계		1,272	1,685	1,889
위 반	개선명령	824	861	1,379
	조업정지	149	191	121
반 경 고	이전명령	1	—	1
	경고	171	217	95
	고발	127	216	293

資料：政府，行政白書(1987)，p.295。

經濟的 측면에서만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國民生活의 質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므로 제품가격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이 轉嫁되더라도，企業主의 費用負擔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우리의 경우 自發的 投資는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政府의 規制措置가 필수적이다。

사실 환경오염은 環境資源의 共有에 따른 市場失敗와 公害防止의 公共財的 性格에서 오는 기업주들의 비용부담회피에서 발생한 市場失敗의 결과이므로，市場機能에 의해 자생적으로 교정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企業의 環境污染防治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代案중에서 ① 經濟的 인센티브에 의한 方法은 공해를 경제적 후생의 감소로만 파악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기 쉽고 따라서企業으로 하여금 새로운 公害防止技術의 개발을 유도하는 誘因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② 政府가 租稅에 의한企業의 公害防止施設에 투자하는 公共投資의 方法은衡平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결국企業간에 公害에 대한 의식이 천차만별이어서，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으나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企業도 있는 현상황에서는 政府에 의한企業負擔의 강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에 불과하며，GNP에 비하면 0.05%에 머무르고 있다。日本의 경우는 環境污染防治投資가 設備投資의 2.2%，GDP의 1%에 달하고 있어서 비율로만 우리의 5.5~20 배에 이르고 있다。

崔 洗，環境問題의 經濟學的 接近方法과 主要政策課題，韓國開發研究，第4卷 第2號，(1982，여름)，pp.102-103。

V. 規制緩和를 위한 改善方案

이서에서 企業活動의 政府規制를 유발하는 要因에 대해 크게 巨視的 次元과 微視的 次元에서 논의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要因을 제거하는 方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봄으로써 結論을 대신하고자 한다.

1. 基本方向

우서 企業의 기본적인 對應方案을 제시한다면,
 첫째, 보다 成熟된 企業意識을 함양하도록 힘써야 하고,
 둘째, 勤勞者와의 共存을 근본으로 하여 우리에게 독특한 家族主義的 經營의
 長點이 重視되도록 노력하고,
 세째, 言論 및 學界에 대한 弘報活動을 증진한다.

이서의 세가지 중에서 첫째와 둘째 事項은 다음에 논하고 세번째 項을 설명하기로 한다. 역시 앞에서 논한 <圖-1>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教育水準이 높고 知的 欲求가 강한 사회에서는 앞으로 言論과 學界의 活動이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輿論의 形成이 言論에 좌우되고, 言論의 自律性이 보장된다면 報道의 內容이 중요해 진다. 言論從事者들이 客觀的인 取材活動을 하겠지만, 時間壓迫속에서 해야하므로 相對的으로 時間的 餘裕와 知的 能力を 많이 갖춘 學界의 研究物에 의존케 될 것이다. 民主化가 필연적이고 民主政府가 輿論에 의해 움직여짐을 전제로 한다면 學界的 對企業 批判은 곧 政府規制를 유발하는 動因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學界에 대한 研究費支援이 아니다. 象牙塔의 世界는 종종 理想論에 치우치는데, 이러한 理想의 근원이 外國이어서는 아니되고 우리의 것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企業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 대해 韓國的 現實에 관한 情報源으로서 기능해야 하고 동시에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 學界的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企業活動의 正當化 提高

무엇보다도 政府規制에 저항할 수 있는 올바른 企業의 行動規範이 필요하다. 政治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政經癒着에 대한 非難을 企業人們이 의연하게 받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러한 關係가 결코 非正常的인 것

는 아니라는 점이다. zero-sum의인 政治圈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설사 敗者가 되더라도 상대방기업을 비방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zero-sum이 되지 않도록, 즉 企業相互間, 企業과 個人間相互利益이 되도록 獨創의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새로운 企業活動의 場을 열도록 해야 한다. 증대된 企業측의 計劃能力이 政府政策의 立案에 투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政府規制를 중지시킬 때는 企業측의 입장만이 아니라 國民經濟的 視角에서 費用一便益分析에 입각한 전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權力指向的思考에서 탈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富는 富 그 자체로서 높이 평가되는 自律의인 民主社會에서는 더 이상의 富를 통한 權力 또는 名譽의 追求가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文化에 비추어 政治資金이 美國처럼 完全 公開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政治資金의 은밀한 去來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正當하지 않은 方法으로 모아진 것이고 正當하지 않은 目的을 위한 手段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正當하게 축적한 富를 正當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설사 政治權力を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正常의인 方法으로 획득한 富는 勤勞者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그 나머지로서 社會에 대한 寄與用途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正常의인 方法으로 富를 획득한다 함은, 企業倫理意識에 따라 다음에 불合理的인 經營을 하였을 때 남게 되는 富를 뜻한다. 合理的 經營속에는 企業와 자신에 대한 適正한 利潤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여 획득된 잔여의 富는 일상적으로 그것을 가능케 한 勤勞者에게 돌아가야 한다. 社會的 責任遂行은 그 다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같은 健全한 의미에서의 社會的 責任意識은 企淺家個人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韓國人은 대부분의 경우 職場과 家庭을 동일시하고 情的인 關係를 職場에서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밖에서 자신이 다른 會社를 좋게 평가할수록 勤務意欲은 더욱 높아지고, 그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3. 企業經營 및 對政府關係의 合理化

I에서 살펴본 企業의 여러가지 行態의 特性이 微視的 次元의 規制誘發要因을 토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企業들의 노력을 통해서 政府規制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企業財務構造의 健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전반적인 負債比

率을 1% 추고, 制度金融獨占을 위한 企業個別의 對政府協商을 止揚해야 한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업체를 제치고 단독으로 對政府 로비활동을 함으로써 特選性 支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全 產業的 次元이 아닌 個別企業에 대한 支援은 반드시 그 企業의 對國民이미지를 惡化시킬 것이며, 동시에 支援에 대한 反對給付로서 많은 準租稅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밀주의에 의한 개별적 對政府協商方式보다는 企業들의 聯合體를 통한 公개적인 단체 협상방식을 통해서 政府의 支援을 產業全體的 次元에서 얻어내고, 그에 대한 反對給付는 國民經濟에 대한 실질적 寄與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技術導入, 對消費者關係 등에 있어서 正當한 企業活動도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보면 規制, 調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政府의 일방적 판단에 의한 規制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國民經濟라는 큰 틀속에서 企業活動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고 政府의 調整役割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分析함으로써, 企業들이 스스로 政府規制의 方向과 그에 대한 代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자, 勞使關係에서 발생한 문제를 政治圈으로 비화시키거나 補助極大化經營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企業들의 官依存의 企業經營態度를 버리고 自律的 經營原則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官의 經營介入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企業經營 및 對政府關係를合理化함으로써 政府規制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Ⅳ에서 논의했던 企業行態上의 문제점을 企業 스스로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첨언한다.